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602
결재일자	2016. 1. 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민방위담당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
조보금	정윤호	박성도	01/11 손정수
협조자			

【2016년도 민방위대】

의무해제자 서한문 및 편성자 임무통지서 전달 추진계획

2016. 1.

행 정 국
자치행정과

【2016년도 민방위대】

의무해제자 서한문 및 편성자 임무통지서 전달 추진계획

민방위대 의무해제자에 대한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서한문 및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자에 대한 민방위대 임무통지서를 전달하여 민방위대원으로서 평시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임무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성북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식을 확립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가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18조(조직), 제19조(편성), 제20조(편성절차 등)
- 나. 「민방위기본법시행령」 제26조(편성절차 등)
- 다.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(서울시 민방위담당관-23352(2015. 12. 10.)호)

II 추진방향

- 가. 의무해제자 ⇨ 「서한문」 전달
 - 재난발생 시 주민신고 및 방호·구조·복구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
- 나. 민방위대 편성대원 ⇨ 「임무통지서」 교부

《 민방위대 편성 임무고지 관련 문제점 》

- 민방위대 편성대원 스스로 본인의 편성사실, 소속 및 임무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 등 인식 필요
- 법정당연제외자의 경우 대상여부, 사유 발생 및 소멸 시 신고의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 편성되어 민원 야기

- (1) 민방위대 편성 사실, 소속, 평시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임무 통지
- (2) 민방위대 편성대원 신고(법정당연제외자 편성제외 등)의무 통지

Ⅲ 추진방법

가. 「서한문」 전달

- (1) 2016년도 의무해제자(1975년생, 만40세) 현황(2015. 12. 31.기준) : 2,983명
- (2) 전달방법 : 지역대 및 직장대 소속 민방위대장이 전달
 - (가) 지역대 : 「서울행정」 민방위」에서 「서한문」 출력, 교부
 - (나) 직장대 : [붙임1]서한문(예시) 참조하여 직접 작성, 교부

나. 「임무통지서」 교부

- (1)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 현황

[단위 : 대, 명, 2016. 1. 8. 기준]

구분	계	지역대	직장대	지원대
대수	550	462	87	1
대원수	30,980	29,869	910	201

- (2) 전달방법 : 지역대, 지원대 및 직장대 소속 민방위대장이 전달
 - (가) 지역대, 지원대 : 「서울행정」 민방위」에서 「임무통지서」 출력, 교부
 - (나) 직장대 : [붙임2]민방위대 편성사실·소속 및 임무통지서 직접 작성, 교부
- ※ 전 민방위대 공통사항 ... [붙임3] 참조하여 안내문에 추가 기재
 - 법정당연제외자 신고의무 안내
 -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

Ⅳ 행정사항

□ 전 민방위대 : 서한문 및 임무통지서 전달 ... 2016. 1. 20.(수)까지

- 붙임 1. 서한문(예시) 1부
- 2. [서식16호] 민방위대 편성 사실·소속 및 임무 통지서 1부
- 3. 민방위대 임무통지 안내문 추가 기재사항 1부. 끝.